

국가재정법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김상현

국가재정법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1관1쇄 인쇄/ 2007년 12월 10일

1관1쇄 발행/ 2007년 12월 1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454-6

7,000원

* 제작대행: (주)FKI미디어

| | |
|-------------------------------|----|
| 요 약..... | 5 |
| I. 서 론..... | 11 |
| 1. 연구배경 | 11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4 |
| II. 국가재정법의 추진현황..... | 16 |
| 1. 재정 관련 법률의 연혁 | 16 |
| 2. 국가재정법 추진현황 | 21 |
| III.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방향..... | 25 |
| 1.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 25 |
| 2. 평가 및 개선방향 | 28 |
| IV. 결 론..... | 46 |
| 참고문헌..... | 49 |
| 부 록..... | 50 |

표·그림 목차

| | |
|--------------------------------------|------|
| 표 1-1. 재정활동의 법률적 근거 | 31 |
| 표 2-1. 재무부보의 주요 내용 | 71 |
| 표 2-2.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 | 02 |
| 표 2-3. 재정법 변천과정의 주요 내용 | 12 |
| 표 3-1. 조세지출 및 세수의 연도별 추이 | 92 |
| 표 3-2. 계속비 관련 조항 | 13 |
| 표 3-3. 국가재정법의 개선필요 조항 | 23 |
| 표 3-4. 추경의 내역 및 규모(1987~2005년) | 4. 3 |
| 표 3-5. 세계잉여금의 처리(국가재정법) | 04 |
| 표 3-6. 세계잉여금의 처리(정부안) | 14 |
| | |
| 그림 1-1.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 21 |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1991년에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은 오래 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4년 10월 국가재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6년 9월 국회 본회 의결을 거쳐 2007년부터 새로운 국가재정법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재정법은 그동안 수차례의 의견수렴 과정과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더욱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가재정법의 제정이라는 당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재정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주요 내용은 국가재정법의 추진현황,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에 대한 평가, 국가재정법의 개선방향 제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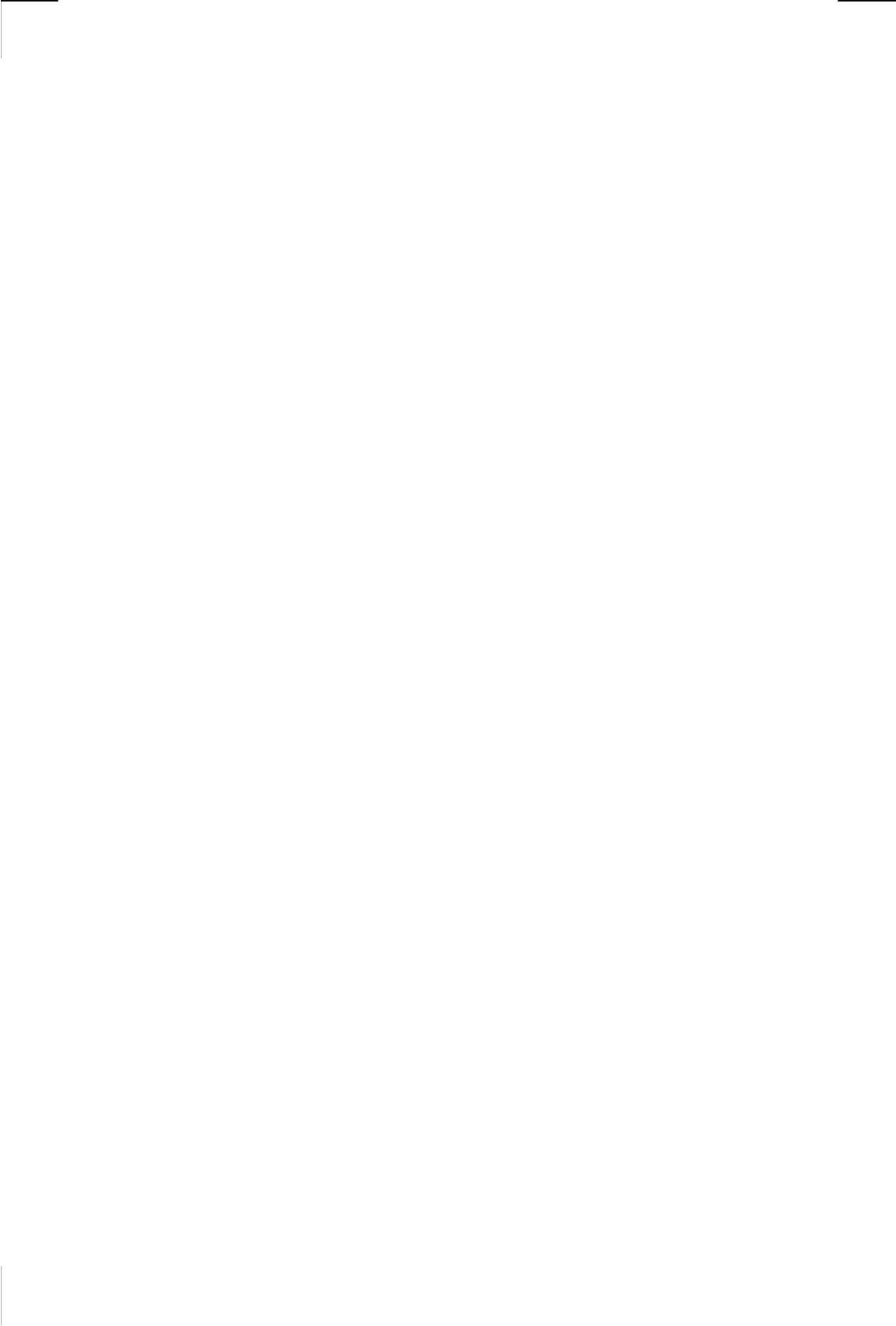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의 강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명문화 등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정정보 조항을 명시한 것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세제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추경편성 순으로 명시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하겠다.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 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조세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회의 예산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항들을 마련하고 정비한 것도 국가재정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은 계속비와 관련하여 총액의 범위 안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국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조항이므로 국가재정법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재정법은 그동안 재정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

항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에 대한 더욱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며, 추경편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편성 및 심의절차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사용토록 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기금의 폐지가 원활하도록 기금에 종료시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예산편성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지침의 통보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관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평 가

국가재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국가재정법만큼 중요한 것이 시행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지적한 국가재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더욱 건실한 시행령의 제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재정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이 연구는 국가재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 있는 공공부문 규모와 역할 모색

국가재정법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I. 서론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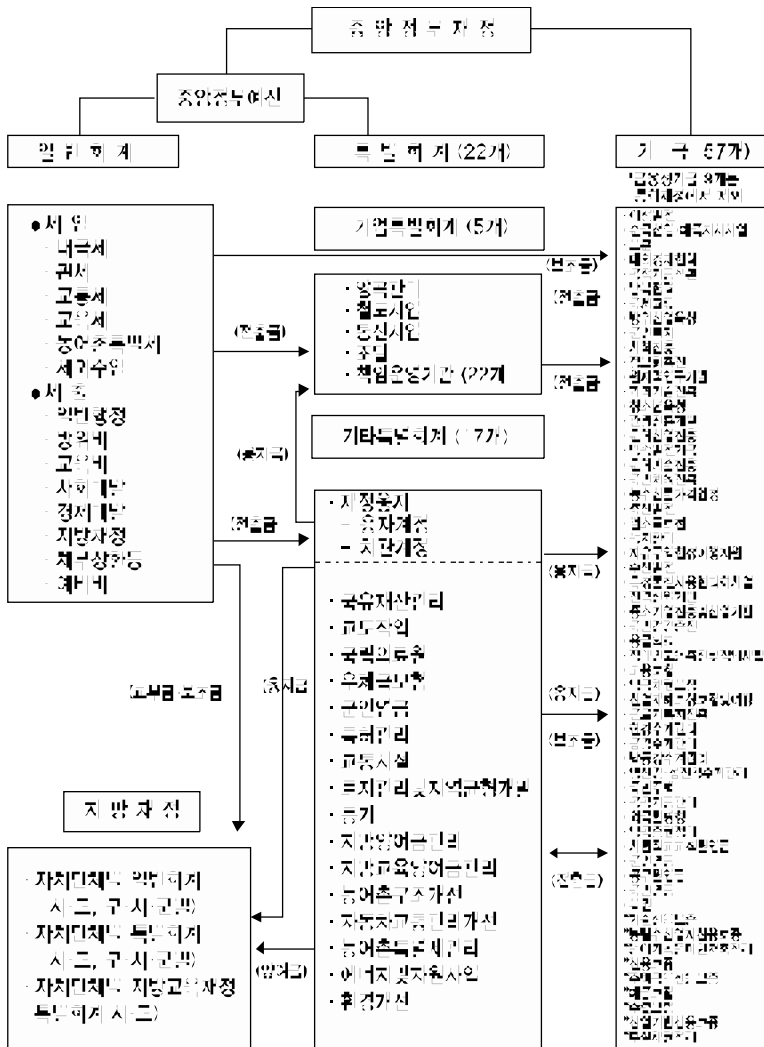
국가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극복이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활동, 그리고 가부장적 견지에서 특정 소비의 촉진과 억제 등 정부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면서 따라 정부 활동도 함께 복잡해지고 다양성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은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정부 재정의 역할이므로 정부 재정의 규모를 정의하는 것은 정부의 규모를 정의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정부 규모나 재정 규모를 확정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공기업의 포함 여부이다. 공기업에 해당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 그리고 공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는 정부출연기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누어진다.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입과 세출로 구성된다. 반면 특별회계나 기금은 여러 개로 구성되는데, 특히 기금의 경우에는 그 수가 57개에 이르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이들 회계 간에는 전입이나

전출, 용자, 보조 등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 그림 1-1.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주: 2004년 기준.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의 재정활동은 개인이나 기관의 의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아래 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재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요약하고 있다. 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재정활동은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그리고 기금관리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표 1-1. 재정활동의 법률적 근거

| 구분 | 세부 구성항목 | 적용법 |
|----------|------------|--------------------------|
| 중앙정부 회계 | 일반회계 | 예산회계법 |
| | 특별회계 | 기업예산회계법 및 각 특별회계법 |
| | 기금 | 기금관련 개별법 |
| | 유가증권 출납회계 | 예산회계법 |
| | 물품회계 |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
| | 채권채무회계 | 예산회계법, 국가채권관리법 |
| | 재산회계 | 국유재산법 |
| | 회계감사 |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
| 지방자치단체회계 | 중앙정부회계에 준함 | 지방재정법 |
| 정부투자기관회계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각 기관 회계 규정 |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것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각각 1961년과 1991년에 제정되었다.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은 오래 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예산회계법은 제정된 지 40년도 더 지났으므로 그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4년 10월 「국가재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의 건전성 강화, 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에 제출된 국가재정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아직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대한 더욱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기존의 문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재정법에 대한 체계적 검토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국가재정법의 제정이라는 당위성에 의존하여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법안을 급조한 측면이 있다. 둘째, 한 사람의 연구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것은 공청회와 같은 형식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 문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정법의 제정이라는 당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재정법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①국가재정법의 추진현황 ②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③국가재정법에 대한 평가 ④국가재정법의 개선방향 제시 등이다.

연구의 특성상 국가재정법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각 조문의 타당성과 재정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는 국가재정법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재정법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국가재정법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식·비공식적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II. 국가재정법의 추진현황

1. 재정 관련 법률의 연혁

우리나라의 재정과 관련한 법률은 크게 재무부보, 재정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의 변천과정은 크게 해방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를 포함하는 미군정 시기, 재정법 시기,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는 예산회계법 등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¹⁾

첫 번째 시기인 미군정 시기는 1945~1948년, 즉 해방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를 포함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인 구조선총독부 회계법규의 적용을 받던 시기로 군정청의 재무부보 지시통칙에 의해 필요 시 임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일본 회계법을 근간으로 미국의 정부회계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과도기적 시기로서 1946년 12월 12일 남조선 과도정부의 입법위원이 설립되어 예산의 결산과 심의를 담당하는 등 현재의 국회와 같은 성격을 가졌으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정법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재무부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1) 정부회계연구원(www.govacc.co.kr)

표 2-1. 재무부보의 주요 내용

- 재무부보 제24호에 규정된 예산안 확정 절차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재무부 사계국이 1차로 심의·사정하여 예산 영달을 통한 예산의 집행·통제 기능을 수행하였다.
- 사계국의 사정을 통과하면 2차로 중앙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정장관이 승인할 경우 예산안으로 확정되었다.
- 또한 예산집행 담당기관은 재무관, 국고 지출관, 지출 대리관, 지불 대리관으로 분할되어 있었으며, 오늘날의 지출원인행위인 지불승인액이라는 개념이 재무부보 제8호 6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 그러나 체계적인 장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회계기준은 일본 회계법의 적용을 받았고 현금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두 번째 시기인 재정법 시기는 1951년 9월 24일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재정법이 제정·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예산회계법 제정 전인 1961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이 시기 재정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의 회계제도를 규정한 최초의 법률로, 일본의 회계법과 재정법을 거의 모방하여 제1장 및 제3장은 재정법과, 제4장 이하는 회계법과 유사하였다. 또한 1961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회계연도의 변경을 위한 두 차례의 수정만 있었으며 10여 년간 사용되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하여 볼 때 예산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하였으나 기본적인 회계인식 수준이나 회계 개념은 종전과 다른 것이 없었다.

이 시기 재정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정법의 제정 당시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서 익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1954년 1월 미국의 회계제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를 매년 7월 1일에서 익년 6월 30

일까지로 1차 개정하였고, 1956년 6월 연력에 맞추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2차 개정을 하였다. 또한 출납 공무원의 출납기한, 지출관의 지출기한, 세출금의 지급기한, 반납금의 여입기한, 한국은행의 세입금 수납 등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까지 완결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증전과 달리 계속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완전 분리되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역할을 확립하였다. 정부회계의 장부와 재무제표의 작성양식이나 종류 등이 현재와 유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제31조와 제34조의 세입세출 결산항목을 살펴보면 결산보고서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서와 세입결산명세서, 세출결산명세서, 국가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현금주의에 의한 보고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예산과 결산은 재무부장관의 소관하에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는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인 심계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규정하여 세출예산의 통제를 강조하였다. 지출원인행위는 영달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으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가 수행된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 지출인증관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여 지출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세액징수기관과 예산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재정법이 여러 가지 결함에 따른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5·16 군사혁명 이후 대규모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961년 12월 19일 예산회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경제기획원이 신설되어 예산회계법의 제정과 정부 예산을 담

당하였으며, 1963년 3월 감사원법의 공포로 심계원이 폐지되고 회계 검사기관인 감사원이 신설되었다.

이 시기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속비제도, 예비비 계상, 계획적인 예산배정과 자금공급 등 정부의 예산집행활동의 능률적 수행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예산이체가 명문화되었으며 결산일이 단축되었고 명시이월의 익년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기업회계원칙에 의한 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재정관리 등의 특징을 가진다. 공공요금 심사 위원회와 예산회계년도 심의회가 설치되었으며 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례와 중앙관서의 내부통제, 기록보고 등이 신설되었고 계약제도가 개선되었다.

그 밖에 특별기금이 설치되었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대체수표가 발행되었으며, 도급경비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 등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1991년 12월 31일 예산회계법에 따른 기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기금관리기본법은 1991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85호까지 69차례 개정되었으며,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가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2005년 개정 때에 삭제되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

-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산운용지침은 자산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주체가 정하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주체는 간접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중앙 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신설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기금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금액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라 기금결산을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사원은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자산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며 기금의 자산운용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 공무원이 기금관리주체나 기금의 자산운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재정과 관련된 미 준정법령 제21호 구조선충독부회계법규의 적용 이후 법의 변천과정을 표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재정법 변천과정의 주요 내용

| 시기 | 일시 | 주요 내용 |
|-------|--------------|---|
| 미군정 | 1945. 11. 2 | 군정법령 제21호 구조선총독부 회계법규 적용 |
| | 1946. 12. 12 | 과도정부 입법의원 설립 ; 재정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무부보 제정 |
| 재정법 | 1951. 9. 24 | 재정법 제정 |
| | 1954. 1 | 재정법 제1차 개정; 회계연도 변경 (매년 7월 1일~익년 6월 30일) |
| | 1956. 6 | 재정법 제2차 개정; 회계연도 변경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 예산회계법 | 1961. 12. 19 | 예산회계법 공포·시행 |
| | 1963. 3 | 감사원법 공포; 심계원 폐지 |
| | 1991. 12. 31 |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

2. 국가재정법 추진현황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기본법으로서 제정하게 된 국가재정법은 재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존 재정관련 법률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 증대와 유관기관들의 재정 관련법 개편 노력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필요에 따라 제정이 추진되었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이나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여정부의 주요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했으며, 또 재정운용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 요구 등을 감안한 투명성 강화장치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건전재정기조의 유지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한 채무의 적정관리를 위한 재정 건

전화 관련규정의 신설 요구, 예비타당성 조사나 총사업비 관리, 출연금 지원, 기술료 사용 등 그동안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이나 지침 등으로 운영되어 왔던 재정 제도들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요구 등을 그 추진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재경부나 국회 등 유관기관들의 재정 관련법 개편 노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그 추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재정부의 경우 「예산회계법. 중 국고금·국유재산 관련 조항들의 분리입법인 「국고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16대 국회에서도 재정개혁법안의 제·개정 작업이 추진되어 2000년 12월 의원입법으로 재정관련 3법인 「재정건전화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법.의 제·개정이 추진되었으나 「기금관리기본법.만이 개정되었고, 2003년 8월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재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유관기관들의 재정 관련법 개편노력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필요에 따라 추진된 국가재정법은 2003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정부 측과 국회의 협의로 그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4년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부·국회 간 입장 차이와 여·야간의 입장 차이로 2년간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의 재정법 제정 추진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4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 개편 방침이 처음 발표되었다. 같은 해 9월 관련기관의 공청회를 거쳐 2004년 4월 국회사무처가 국회기관지인 ‘국회보’를 통해 제시한 ‘17대 국회입법과제’에 포함되었다. 또한 2004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재정경제·기획에

산 분야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획예산처가 국가재정법(가칭)의 개편·제정을 보고하였으며, 6월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는 국가재정법의 개편 및 국회제출을 발표하였다.

2004년 7월 4일 기획예산처에서 그 제정안을 마련하여 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기획예산처는 국회정무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및 국가재정법의 제정을 보고하였다. 같은 해 9월, 법제처장이 ‘2004년 정기국회 입법추진대책’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입법계획을 최종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시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 10월 1일, 야 4당인 한나라·민주노동·민주당·자민련은 국회에서 ‘국가재정법과 예결위 상임위화’라는 합동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고, 10월 3일 기획예산처는 불황 등의 세수 부족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의 내용을 적자국채 발행 시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여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국가재정법’에 반대한 한나라당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건전재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5년 4월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서 법안의 내용을 논의하였으나 같은 달 한나라당의 심의거부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2005년 11월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법과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가건전재정법의 병합을 위한 국회와 기획예산처의 T/F 구성을 주장하였으며, 12월 여야 의원 100인이 양성평등 추구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모든 정부예산에 예산이 남여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적예산’의 도

입을 주장하였다.

2006년 4월 국회 운영위의 법안심사위에서 예산편성 시 헌법상 독립기관에 부여한 의견제출권을 예산편성권으로 수정하여 조건부 의결, 통과시켰다. 국가재정법은 같은 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운영위에서 수정한 국회·대법원 등의 헌법상 독립기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편성 등 권한 확대를 가져와 위헌소지의 문제를 일으켜 의결이 처리되지 못하였다. 2006년 9월 7일 국회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켰으며 본회의에 상정,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Ⅲ.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방향

1.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이 표방하는 국가재정법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셋째,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에 의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추정편성요건의 강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を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안 제7조).
-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다(안 제8조).
-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안 제9조).

-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안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 제1항).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예산의 원칙에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안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 제4호 및 제61조).
-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인건비(보수 인상) 충당을 위해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다(안 제22조).
-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 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그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유예 후 시행하도록 한다(안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8조 및 제29조).
-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결산 첨부서류를 확대한다(안 제34조·제58조 및 제59조).
-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안 제38조 및 제50조).

- 현물출자, 전대차관 도입, 기술료 등에 대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함. 다만,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한다(안 제53조).
- 정부는 결산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안 제58조 내지 제61조).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20% 이하(현행 30%)로, 금융성기금은 30% 이하(현행 50%)로 축소한다(안 제70조).
-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①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안 제89조).
-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①교부금 정산 ②채무상환 ③추경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와 관련하여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안 제90조).
-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안 제91조).
-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정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 100조).

2. 평가 및 개선방향

국가재정법은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쟁점들이 정리되었다. 특히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의 강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총액 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명문화 등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정정보 조항을 명시한 것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①교부금 정산 ②채무상환 ③추경편성 순으로 명시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인건비(보수 인상) 충당을 위해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예비비는 1%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운영되었다. 또한 인건비에 충당되는 예비비는 예비비의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지적되었다.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 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조

세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세지출과 세수의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조세지출의 규모는 2000년 13조3천억 원 정도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약 20조 원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세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까지 감소하다, 그 이후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5년의 조세지출 비중은 14.5%에 달한다.

표 3-1. 조세지출 및 세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억 원, %)

|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조세지출 | 132,824 | 137,298 | 147,261 | 175,080 | 182,862 | 199,878 |
| 세 수 | 832,214 | 886,020 | 964,086 | 1,075,599 | 1,101,603 | 1,182,288 |
| 조세지출 비중 | 13.8 | 13.4 | 13.3 | 14.0 | 14.2 | 14.5 |

주: 2005년은 전망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2001~2005.

국회의 예산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도 국가재정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결산 첨부서류를 확대한다. 둘째,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넷째,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20% 이하(현행 30%)로, 금융성기금은 30% 이하(현행 50%)로 축소한다. 다섯째,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여섯째, 독립기관의 예산과 관련하여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토록 한다.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정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들의 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의 제17조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의 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전년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가재정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대비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의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1을 합한 금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경우 예산팽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세입예측을 과다하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은 계속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었다.

표 3-2. 계속비 관련 조항

제22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총액의 범위 안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이에 충당할 수 있도록 국채 또는 차입금 한도액을 실제 세입예산에 계상된 규모보다 초과 책정하여 국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3항과 제4항은 국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조항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3항은 재정지출이 선거와 같은 시기에 본래의 목적과 다른 취지로 사용되게 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재정법에서 제3항과 제4항이 삭제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가재정법은 그동안 재정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국가재정법의 개선필요 조항

-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안 제13조)
- 기금의 설치 및 통합·폐지(안 제5조 및 제15조)
- 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안 제29조)
- 예산안의 국회 제출(안 제33조)
- 예산안의 첨부서류의 생략(안 제36조)
- 예비타당성 조사(안 제38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안 제66조)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안 제89조)
- 세제잉여금의 처리(안 제90조)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제 13조 ①항은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축성의 이름으로 여유재원의 전입 및 전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회계 및 기금에 여유재원이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경우 다른 회계나 기금 간 그리고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의 여유재원 활용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은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매우 모호하여 여유재원의 전입 및 전출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유재원의 전출 및 전입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한편, 당초 정부가 제안한 국가재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1.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3번째 항목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경편성 사유를 정부 안보다 제한함으로써 추경편성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추경편성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표 3-4>는 그동

안 우리나라에서 편성된 추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표 3-4. 추경의 내역 및 규모(1987~2005년)

| 구분 | 추경내역 | 추경규모 (억 원) |
|---|---|---------------|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1987년 재해대책비 | 5,000 |
| | 1988년 재해대책비 | 800 |
| | 1989년 재해복구비 | 2,800 |
| | 1990년 2차 걸프만 관련 경비 | 860 |
| | 1991년 1차 걸프사태 지원금 | 2,040 |
| | 1991년 2차 재해대책비 | 1,500 |
| | 1995년 재해대책 예비비 | 3,000 |
| | 1996년 재해대책 예비비 | 2,000 |
| | 2001년 재해대책 예비비 증액 | 2,778 |
| | 2001년 2차 테러방지 지원 | 607 |
| | 2002년 재해대책 예비비 | 36,050 |
| | 2003년 증액교부금 (태풍피해복구 지방비 분담분 국고전환 지원) | 13,000 |
| | 2003년 재해복구비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재해복구비 지원) | 2,500 |
| 2003년 재해대책 예비비 | 14,500 | |
|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988년 재특전출 | 600 |
| | 1989년 의료보호 | 526 |
| | 1989년 영구임대주택 건설 | 1,825 |
| | 1989년 민생치안대책비 등 | 3,886 |
| | 1989년 재특회계전출 | 13,671 |

표 3-4. 계속

| 구분 | 추경내역 | 추경규모 (억 원) |
|---|--------------------------------|---------------|
|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990년 1차 5대 당면과제 해결 | 8,583 |
| | 1990년 2차 재특전출금 | 21,630 |
| | 1990년 2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비 등 | 850 |
| | 1991년 2차 환경개선, 제조업 경쟁력 강화 | 1,176 |
| | 1991년 2차 사회간접자본 | 10,534 |
| | 1991년 2차 농어촌 구조개선 | 4,231 |
| | 1991년 2차 재특세입결함 보전 | 10,750 |
| | 1991년 2차 91연내 추가지원소요 등 | 5,244 |
| | 1992년 신용보증기관 출연 | 1,500 |
| | 1994년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 | 3,480 |
| | 1995년 재정투융자 지원 | 11,230 |
| | 1996년 재정투융자 지원 | 4,747 |
| | 1997년 재특전출금 | △6,244 |
| | 1998년 1차 금융구조조정 비용 | 36,000 |
| | 1998년 1차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출삭감 | △49,632 |
| | 2000년 1차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6,889 |
| | 2000년 1차 청소년 실업대책 | 1,487 |
| | 2000년 1차 의약분업, 구제역, 산불 등 현안 지원 | 3,102 |
| | 2001년 1차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 | 4,500 |
| | 2001년 1차 청소년실업대책 추진 | 400 |
| | 2001년 2차 SOC 확충 | 3,000 |
| | 2001년 2차 수출보험기금 확충 | 1,000 |
| | 2001년 2차 중소기업신용보증 지원 확대 | 1,000 |
| | 2001년 2차 쌀값안정 지원 | 2,800 |
| 2001년 1차 지역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 | 7,354 | |

표 3-4. 계속

| 구분 | 추경내역 | 추경규모 (억 원) |
|--|-----------------------|---------------|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1988년 양곡기금 한은차입금 이자 | 2,594 |
| | 1988년 외채상환 | 1,052 |
| | 1988년 교부금 정산 및 기채상환 등 | 2,373 |
| | 1988년 민원관련보상비 등 | 2,228 |
| | 1989년 지방재정 | 2,729 |
| | 1989년 지방교육재정 | 2,748 |
| | 1990년 1차 법정교부금 정산 | 6,064 |
| | 1990년 1차 기타채무상환성 경비 등 | 5,158 |
| | 1990년 2차 법정교부금 정산 | 2,708 |
| | 1991년 2차 법정교부금 | 8,010 |
| | 1992년 법정교부금 정산 | 1,077 |
| | 1995년 지방재정 교부금 | 901 |
| | 199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801 |
| | 1996년 지방재정 교부금 | 985 |
| | 1997년 지방재정 교부금 | △1,312 |
| | 199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166 |
| | 1998년 2차 채무상환 및 기타 | 1,624 |
| | 1998년 2차 지방양여금관리특 | 2,442 |
| | 1998년 2차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 | △9,417 |
| | 1999년 1차 채무상환 및 기타 | △4,152 |
| | 1999년 2차 지방재정교부금 | 1,182 |
| | 1999년 2차 채무상환 및 기타 | 10,400 |
| | 2000년 1차 법정교부금 정산 | 11,145 |
| | 2001년 1차 교부금 정산 | 35,523 |
| | 2002년 1차 지방교부금 정산 | 2,883 |
| | 2002년 1차 지방교육교부금 정산 | 2,498 |

표 3-4. 계속

| 구분 | 추경내역 | 추경규모 (억 원) |
|--|--------------------|---------------|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2003년 1차 지방재정교부금 | 4,672 |
| | 2004년 1차 지방재정교부금 | 2,094 |
| | 2004년 1차 채무상환 및 기타 | 758 |
| | 2005년 1차 지방재정교부금 | 6,513 |
|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및 기타 | 1992년 예비비 부족 소요 | 440 |
| | 1995년 교육환경 개선 투자 | 3,000 |
| | 1998년 2차 교육비 | 3,000 |
| | 1998년 2차 사회개발 | 2,605 |
| | 1998년 2차 경제개발 | 35,875 |
| | 1998년 2차 일반행정 | 3,601 |
| | 1998년 2차 재정융자 지원 | 10,670 |
| | 1998년 2차 예비비 | 9,450 |
| | 1998년 2차 재정융자특 | 10,671 |
| | 1998년 2차 농어촌 구조개선특 | 750 |
| | 1998년 2차 교통시설특 | 14,149 |
| | 1998년 2차 환경개선특 | 200 |
| | 1998년 2차 철도사업특 | 1,390 |
| | 1999년 1차 교육비 | 1,031 |
| | 1999년 1차 사회개발 | 4,993 |
| | 1999년 1차 경제개발 | 14,197 |
| | 1999년 1차 재특회계 지원 | △14,291 |
| | 1999년 1차 재정융자특 | △14,291 |
| | 1999년 1차 농어촌 구조개선특 | 1,990 |
| | 1999년 1차 교통시설특 | 8,062 |
| | 1999년 2차 교육비 | 3,373 |
| | 1999년 2차 사회개발 | 1,234 |
| | 1999년 2차 경제개발 | 7,828 |

표 3-4. 계속

| 구분 | 추경내역 | 추경규모 (억 원) |
|--------------------|----------------------|---------------|
|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및 기타 | 1999년 2차 재정융자 지원 | 3,364 |
| | 1999년 2차 재정융자특 | 3,364 |
| | 1999년 2차 농어촌 구조개선특 | 800 |
| | 1999년 2차 교통시설특 | 6 |
| | 2001년 2차 재정융자특 | △2,400 |
| | 2001년 2차 농특세관리특 | △3,603 |
| | 2001년 2차 교통시설특 | 3,100 |
| | 2001년 2차 에너지 및 자원특 | 500 |
| | 2001년 2차 철도사업특 | 500 |
| | 2003년 1차 방위비 | 883 |
| | 2003년 1차 교육비 | 4,992 |
| | 2003년 1차 사회개발 | 3,723 |
| | 2003년 1차 경제개발 | 20,322 |
| | 2003년 1차 일반행정 | 1,900 |
| | 2003년 1차 재정융자특 | 2,120 |
| | 2003년 1차 자동차교통관리 개선특 | 3,163 |
| | 2003년 1차 농어촌 구조개선특 | 3,457 |
| | 2003년 1차 교통시설특 | 11,468 |
| | 2003년 1차 환경 개선특 | 220 |
| | 2003년 1차 책임운영기관특 | 424 |
| | 2003년 1차 철도사업특 | 3,011 |
| | 2004년 1차 교육비 | 1,826 |
| | 2004년 1차 사회개발 | 3,983 |
| | 2004년 1차 경제개발 | 8,505 |
| | 2004년 1차 일반행정 | 667 |
| | 2004년 1차 교통시설 | 450 |

표 3-4. 계속

| 구분 | 추경내역 | 추경규모 (억 원) |
|--------------------|---------------------|---------------|
|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및 기타 | 2004년 1차 에너지 및 자원사업 | 450 |
| | 2004년 1차 환경 개선 | 26 |
| | 2005년 1차 일반행정 | 2,455 |
| | 2005년 1차 방위비 | 2,800 |
| | 2005년 1차 사회개발 | 2,588 |
| | 2005년 1차 예비비 | △6,400 |
| | 2005년 1차 기타 | 496 |
| | 2005년 1차 에너지 및 자원사업 | 390 |

<표 3-4>와 같이 과거에 편성된 추경의 많은 부분이 국가재정법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추경편성의 이유에 해당된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및 기타에 포함된 항목 중에서도 앞의 세 가지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재정융자특별회계나 재정융자 지원의 경우에는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경제개발, 사회개발, 교육비, 방위비,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경편성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추경편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편성 및 심의절차를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은 <표 3-5> 같이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①교부금정산 ②채무상환 ③추경편성 순으로 하고 있다.

표 3-5. 세계잉여금의 처리(국채정법)

| |
|---|
| <p>제9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p>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p> <p>⑦세계잉여금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p> <p>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거나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
|---|

한편,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계잉여

금 사용을 채무상환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Ⅰ 표 3-6. 세계잉여금의 처리(정부안)

| |
|---|
| <p>제76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연도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다음 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상환 <p>②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세계잉여금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p> <p>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규모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
|---|

따라서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원안에 비하여 채무상환을 우선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역시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잉여금 발생이 불요불급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은 재원보다는 지출의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세계잉여금의 추정사용 항목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의 설치 및 통합·폐지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은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남설에 제한을 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동법안 제15조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은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으로써 기금의 통합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과거와 같이 신설되는 기금의 수가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나, 기존의 기금이 폐지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금마다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기간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총액 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에 예산편성을 위한 시간을 더욱 많이 부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김으로써 각 부처에 예산편성을 위

한 시간을 보다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안의 국회제출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은 60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120일, 미국은 240일(제출예산안 보완 75일전), 프랑스 70일, 독일 120일, 일본 60일 등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국회 예산안 제출시기를 당길 필요성이 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의 생략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6조는 “제35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의 생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에 비하여 비교적 쉽게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를 포괄적으로 생략하기보다는 추정편성시 요구되는 서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실시주관 기관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액배분자율편

성예산제도의 도입은 구체적 사업에 대한 판단은 부처에게 맡기고 중앙예산기관은 전략적 판단과 사후적 평가에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성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중앙예산기관이 개별사업(project)에는 간섭하지 않고 보다 큰 범주의 사업(program)의 적정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요시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고, 그렇지 않은 개별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각 부처가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타당성 제도의 주관기관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공정성이다. 어떤 기관이 예비타당성 제도를 주관하느냐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성 문제이다. 과거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의 관계는 과도요구와 통제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을 주관하게 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러나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가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각 부처는 총액을 배정받게 되므로 과거와 같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장밋빛 희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각 부처가 추진사업들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분석을 조작할 동기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종합하자면, 개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분석의 주관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지원과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체의 전략적 차원에서 요구

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평가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여야 하며, 이것은 개별사업보다는 더 큰 사업(program)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업
2.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사업
3. 일단 사업이 추진되면 돌이키는데 비용이 매우 큰 사업

이상과 같은 개별사업에 있어서, 위의 요건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가 직접평가를 하도록 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가 직접 평가를 하기보다는 부처의 평가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66조 제2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3월 말 정도에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IV. 결 론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은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쟁점들이 정리되었다. 특히,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의 강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명문화 등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정정보 조항을 명시한 것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①교부금 정산 ②채무상환 ③추경편성 순으로 명시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인건비(보수 인상) 충당을 위해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 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조세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의 예산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도 국가재정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결산 첨부서류를 확대하였다. 둘째,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20% 이하(현행 30%)로, 금융성기금은 30% 이하(현행 50%)로 축소하였다. 다섯째,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여섯째, 독립기관의 예산과 관련하여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토록 하였다.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정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들의 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의 제17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의 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전년도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가재정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대비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의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1을 합한 금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할 경우 예산 팽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세입예측을 과다하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은 계속비와 관련하여 총액의 범위 안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국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조항이므로 국가재정법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가재정법은 그동안 재정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전입 및 전출에 대한 더욱 더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추경편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편성 및 심의절차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세계잉여금의 처리: 추경에 사용토록 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기금의 설치 및 통합·폐지: 기금의 폐지가 원활하도록 기금에 종료시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지침의 통보: 예산편성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한 달 정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번째, 예산안의 국회제출: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을 충분히 하기 위하여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예산안의 첨부서류의 생략: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되는 서류를 포괄적으로 생략하기보다는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관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 총액배정자율편성예산제도와 부합된다. 아홉 번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역시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한 달 정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 정부, 『국가재정법안』, 2004. 10.
-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재정법안(대안)』, 2006. 9. 7.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국가재정법안에 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2005. 4.
- 국회제정제도개혁실무준비반, 『재정제도 개혁방안』, 2003. 4.
- _____, 『주요국의 재정관계법』, 2003. 4.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 제정요강』, 2004. 7.
- 한국법제연구원, 『재정관련 법령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7.

국 가 재 정 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7.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제58조제1항 및 제73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60조 및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보고서 및 기금결산검사보고서를 송부할 때에 예산 및 기금의 성과검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국회에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⑧기획예산처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관장) ①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의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미리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은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 예 산

제1절 총 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 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

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 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 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2.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35조(국회 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5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총액계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 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담수물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 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

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 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 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 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

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예산불확정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결산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 계속비결산보고서
3. 국고채무부담 행위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통합재정수지보고서
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7.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

고서

8.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의 집행실적보고서

9. 사고이월명세서

10.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12.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의 집행실적보고서

13.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보고서

14.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정자금의 운용실적과 이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금의 사용실적에 관한 보고서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 마. 수납액
- 바. 미납결손액
- 사. 미수납액

2. 세출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이월액
- 다. 예비비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지출액
- 바. 세출예산현액
- 사. 지출액
- 아. 다음 연도 이월액
- 자. 불용액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 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결산의 작성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의 작성에 있어서는 제58조제3항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금사용명세서에 따른 예비금사용총괄명세서

②결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결산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한 서류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결산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금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기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

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⑧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동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

는 서류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기금의 결산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결산보고서에 따라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성과보고서
8.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5조(기금정책심의회) ①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2.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 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

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수립

3.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제정 및 개정

4.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5. 기금의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정책심의회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④정책심의회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정책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전전 회계연도 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

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제9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재정용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용자특별회계의 차입금 (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⑦세계잉여금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거나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다음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
4.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채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

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재정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102조(벌칙)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재정경제부장관

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 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②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監査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基金管理基本法 第2條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雇傭保險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基金管理基本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基金管理基本法 第5條”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基金管理基本法 第8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公企業의 經營構造改善 및 民營化에 관한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⑦課稅資料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豫算會計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中·長期 財政運用計劃”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

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國家를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國家情報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豫算會計法 第29條”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豫算會計法 第31條”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國家債權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⑩國立醫療院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豫算會計法 第37條”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⑪國有財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豫算會計法 第7條”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⑫國債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豫算會計法 第9條”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豫算會計法 第7條”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⑬國會圖書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⑭國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豫算會計法 第29條”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㉑ 國會事務處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㉒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㉓ 企業豫算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豫算會計法 第35條第1項”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㉔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基金管理基本法 第5條”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㉕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 관한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基金管理基本法 第7條第1項 및 第9條”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㉖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㉗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㉘文化財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㉙物品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㉚放送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㉛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㉜補助金の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豫算會計法 第15條 및 第117條”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㉝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㉞肥料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豫算會計法 第47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⑳産業發展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基金管理基本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㉑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豫算會計法 第18條”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㉒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㉓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㉔糧穀證券整理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基金管理基本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㉖에너지 및 資源事業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㉗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④③外國換去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豫算會計法 第7條”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豫算會計法 第47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④④郵政事業運營에 관한 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豫算會計法 第25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豫算會計法 第36條·第37條”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④⑤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④⑥財政融資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豫算會計法 第36條”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④⑦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④⑧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④⑨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⑤0 租稅特例制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⑤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2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관한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⑤3 地方財政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豫算會計法 第25條第3項”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同法 第39條第2項”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⑤4 責任運營機關의 設置·운영에 관한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豫算會計法 第25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豫算會計法 第37條”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⑤5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⑤6 韓國銀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7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⑤8 協同研究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基金管理基本法 第2條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基金管理基本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9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1. 교도작업특별회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4. 군인연금특별회계법
5. 기업예산회계법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7.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8. 등기특별회계법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1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3. 재정용자특별회계법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6. 특허관리특별회계법
17.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12. 근로자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 남북협력기금법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1. 농작물재해보험법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3. 문화예술진흥법
24. 방송법
25. 보훈기금법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수출보험법
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32. 신용보증기금법
3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34. 양곡증권정리기금법
35.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36. 여성발전기본법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한한다)
3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40. 외국환거래법
41. 원자력법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임금채권보장법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 전기사업법
47. 정보화촉진기본법
48. 주택법
4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51. 청소년기본법
52. 축산법
53.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별표 3,

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리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